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김민석 (외교부 등 4개 소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직원 채용시험 또는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에서 어학시험 성적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어학시험 기준점수를 별도로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능력 있는 청각장애인의 시험 응시기회를 보장하고, 발명진흥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사업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발명활동 촉진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의 발명활동 촉진도 추가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8. 0. ~ 9.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의 개정)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영어 과목은 토플(TOEFL)·토익(TOEIC)·텡스(TEPS)·플렉스(FLEX) 또는 그 밖의 공인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다만, 8급·9급 외국어 선택과목 중 영어는 그렇지 않다.
2. 제1호 본문에 따른 공인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3. 원장은 제1호 본문에 따른 공인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제2호에 따른 기준점수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영어 과목 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조(「발명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학생과”를 “학생,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다) 및”으로 한

다.

제3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을 “운전면허증·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으로 한다.

제4조(「외무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외교부장관은 위 표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인 외무공무원에게만 적용할 외국어 어학검정의 종류, 기준 및 적용 대상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별표 6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무공무원임용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3 비고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실시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특허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명진흥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학생과</u> 여성의 발명활동 촉진	4. <u>학생,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다) 및</u> ----- --
5. ~ 9. (생략)	5. ~ 9. (현행과 같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신상정보의 제출 내용 등) ①·② (생략) ③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기본신상정보와 변경정보를 받으면 다음 각호의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하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을 말한다)· <u>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u> 2. ~ 4. (생략) ④ ~ ⑦ (생략)	제3조(신상정보의 제출 내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 ----- ----- <u>운전면허증·학생증 또는 청소년증</u> <u>증</u>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외교부 제도평가팀	
연 락 처	(02) 2100 - 7152
법무부 치료처우과	
연 락 처	(02) 2110 - 3079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5920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연 락 처	(02) 2197 - 9166